

# 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운영 계획

서울삼육중학교

## I 추진 근거 및 운영 목적

### 1 추진 근거

- 가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2020.06.11.)
- 나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(2021.01.01.)
- 다. 경기도교육청 2023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 알림(2023.02.24.)
- 라.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(경기도교육청교원역량개발과, 2023.02.)

### 2 운영 목적

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II 세부 추진 계획

###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

- 가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
  -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 -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
  -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 -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## 나. 위원 구성

- 근거 :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, 제15조 제1항 ~ 제3항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(위촉)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- 교원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됨
- 2023학년도 구성 : 총 7명(교감, 교무부장, 학생부장, 학부모위원3명, 지역사회위원 1명)

## 2

### 교육 주체별 교육 일정 및 예방교육 내용

교육대상	구 분	내 용
교직원	일 정	- 7월 교직원 연수 - 교직원 회의시 수시
	교육 내용	·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·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·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·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학생	일 정	- 2023년 10월 24일(화) 1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- 조회 시간을 통한 연중 수시 교육
	교육 내용	·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·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·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·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학부모	일 정	학부모 총회(2023년 3월 21일) 및 가정통신문
	교육 내용	·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·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·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·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Ⅲ 기대 효과

---

- 가.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보호를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
- 나.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사의 수업권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
- 나. 학교 교권보호 자율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공동체간의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